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23.09.08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서정원,이원준

○ 보호구에 관한 사항(건축부)

- 작업 중에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니 착용 지시 바람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118P 3.1.10. 안전보호구-001(보호구 지급 및 관리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이동식 비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조치 바람.
  - 1) 안전난간 필히 설치 바람
  - 2)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안전고리 사용 철저
  - 3) 작업 시 안전모 착용
  - 4)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아웃트리거 설치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(비계 등의 조립/해체 및 변경), 제68조(이동식비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양측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가 없는 A형 사다리(옥탑층 및 지상4층 각각 1개)는 근로자의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람
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69p 3.1.2 사다리(A형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즉시 설치하시기 바람

- ① 지하2층~지상7층 주계단 및 부계단 단부 (전체 구간)
  - ② 옥상 조경식재부분 난간높이 1.2M 미달(현재 약 1m)
  - ③ 지상4층 중정부분
  - ④ 지상1층~지상2층 구간 계단부분 안전난간 중간대 미설치
  - ⑤ 지상4층~지상7층 유리창 미설치 부분
  - ⑥ 지상1층 내부계단 상부 작업업 비계설치 단부
- 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
  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58P 3.1.1 안전난간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굴삭기 작업 중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
- 후면에는 접근금지표지를 부착하여야함(협착 방지봉 설치)
- ※ 위험성평가 미시행 사항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137P 3.2.2 건설기계-007(굴착기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장 내에 부설된 가설분전함(지상1층, 옥상층)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만 개폐하도록 하시기 바람

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 사항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81p

3.1.4 감전 재해예방-가설분전함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고소작업대(스카이)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자는 안전난간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내에서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람

※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시행 사항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134p

3.2.2 건설기계안전-고소작업대

